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24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C

2. D

3. E

4. F

변론 종결2018. 6. 1.

판결 선고2018.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재개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재개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 F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D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8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7.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26,670,000원으로 하여 분양받았다.

2) 망인은 2012. 10. 1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9. 12.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인이 2012. 10. 17.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하여 직접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D,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는바 그 청구의 근거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선해하면 원고의 망인(또는 상속인인 피고 D, E,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99. 12. 3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3.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2006. 7. 25.경까지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망인(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망인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본안으로 나아가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망인과 피고 조합의 분양계약 체결일인 1980. 7.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3.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점유하다가 1999. 12.경 원고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시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김용태

별지